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보험계약은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임. 보험료는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상황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부과되어야 함.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계약자로부터 목적물의 리스크 정도와 관리상황에 대한 내용을 계약체결 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계약자가 목적물의 리스크에 대한 고지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비대칭성은 다수의 민원과 역선택을 유발할 수 있고,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어렵게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험기간 동안 계약자의 지속적인 리스크관리가 실행될 수 있도록 고지의무제도의 수동화와 손해보험계약자의 소방법 등 안전법규 준수의무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4편 보험(이하 ‘보험계약법’) 제638조)

-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관점에서 보험계약은 리스크 재무방법 가운데 하나인 전가방법(Risk Transfer)에 해당하고 그 비용인 보험료는 리스크관리 비용(Cost of Risk Management)에 해당함
- 2015년 우리나라 국민 1인이 리스크관리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즉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389만 원으로 2005년 181만 원에 비해 연평균 8.9% 증가함
 - 국민 1인당 생명보험료는 2005년(128만 원)에 비하여 연평균 6.8% 증가한 231만 원임
 - 또한 손해보험료는 2005년(53만 원)에 비하여 연평균 12.9% 증가한 158만 원임

■ 보험료는 동일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일지라도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정도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함

- 보험회사는 동질적인 리스크(homogeneous risk)를 대량으로 집적하여 보험사고 발생확률과 사고

1건당 보험금을 예측하여 산출한 평균 순보험료에 사업비 등 부가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약자에게 부과함

$$\text{순보험료} = \frac{\text{사고발생건수}}{\text{보험계약건수}} \times \frac{\text{지급보험금}}{\text{사고발생건수}} = \text{사고발생확률} \times \text{건당 보험금}$$

- 보험료는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상황에 따라 사고발생확률이 달라지고, 사고 시 발생하는 손해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의 리스크 규모, 관리상태 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고지의무 제도(보험계약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이용하여 보험목적에 대한 리스크 규모와 리스크관리 상황 정보를 파악하고 있음

- 계약자의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 등에 있어서 중요하고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음

■ 보험계약법 제651조는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 시 효력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때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¹⁾할 수 있음
 -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음
- 또한 보험회사가 질문서를 이용하여 계약자로부터 받은 내용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제651조의 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보험업법은 표준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법을 원용하여 “보험계약 시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와 “위반 시 효과”를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고지의무를 일본, 독일과 비교하여 보면 법조문의 구성, 계약자의 고지의무 부담내용, 고지 의무사항 부담방법에서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는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분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독일과 동일하나 고지의무 내

1)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655조)

용과 부담방법에 대한 법조문의 구성과 전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

- 특히 일본과 독일의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중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험회사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임

〈표 1〉 한국, 일본, 독일의 고지의무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독일
법률 체계	· 상법과 보험업법 분리 · 상법의 통칙에 규정	· 보험법과 보험업법 분리 · 보험법의 개별상품별 규정	· 계약법과 보험업법 분리 · 계약법의 통칙에 규정
법률 조문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제4조(손해보험), 제37조(생명보험), 제62조와 제66조(상해질병정액보험): 보험회사가 손해발생가능성(위험)에 대해 서면으로 요청한 중요한 사항(고지내용)을 고지해야 함	제2절 고지의무, 위험증가, 기타 의무 제19조(고지의무) (1) 보험자의 서면질문에 대해 고지 (2)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해제 (3) 고의·중과실의 경우만 한 달 이내에 해제 (4) 보험자 귀책사유 시 해제불가하나 계약조정가능 (5) 문서로 고지의무 위반사항을 통보 시만 보험자 권한인정 (6) 계약변경으로 보험료가 10%이상 증가, 부담보되는 경우 1개월 이내 해지 가능
부담 방법	고지사항이 광범위하고 서면질문의 보험회사 자율적 사용	고지사항을 규정한 서면질문의 의무화	고지사항을 규정한 서면질문의 의무화
계약 해지 소멸 시효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체결 시로부터 3년	제28조(손해보험), 제35조(생명보험), 제84조(상해질병정액보험): 해제불가조항 규정 1개월, 5년	제21조(보험자의 권리행사) 1개월 이내, 5년(질병보험 3년 194조 1항) : 고의일 경우 10년
효과	제655조(보험계약의 해제와 보험자의 담보책임)	제31조(손해보험), 제59조(생명보험), 제88조(상해보험):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 발생	제21조 (2)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급부면제

자료: 1) 이필규·최병규·김은경(2009), 『2009년 독일보험계약법』, pp. 18~20

2) 일본 보험법(2018, 4, 13)(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0AC0000000056&openerCode=1)

- 보험계약에 대한 정보비대칭성²⁾으로 인한 민원³⁾과 역선택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계약자의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지내용의 확정과 부담 방법 등에 대한 구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한기정(2017), 『보험법』, 박영사, p. 192

3) 2016년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민원건수는 생명보험이 463건, 손해보험 961건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 4. 18), “2016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p. 4

- 우리나라는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판례⁴⁾로 되어 있어 계약당사자가 공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나 독일, 일본 등은 그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독일은 계약자는 보험자가 위험인수를 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과 보험자가 문서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 고지해야 함(제19조 제1항)
 - 일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담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중요한 사실로 하고 보험자가 요청한 사실에 대해 고지해야 하며 이를 보험종목별로 규정하고 있음
 - 중국은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 또는 피보험자와 관련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의 승낙 또는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가 “임의적으로 서문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자가 요청한 중요한 사실에 대해 성실하게 고지하도록 한정”하는 고지의무의 수동화⁵⁾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지의무의 수동화는 프랑스(1989년)가 먼저 도입하였고 독일(2007년)과 일본(2008년)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아울러 손해보험 계약자에 대해 손해방지와 손실경감 등의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손해방지의무(보험계약법 제2장 손해보험 통칙 제680조)외에 리스크관리 준수 의무조항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손해방지의무는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손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음
 - 계약자가 지출한 손해경감방지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하도록 되었음
 - 화재보험표준약관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하며, 제21조(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하고 이를 중과실 또는 고의로 하지 않은 때에는 경감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함
- 계약자의 손해방지에 대한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의 규정은 사고가 생긴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나 사고 전 일지라도 계약자가 소방법, 건축법규 등에서 정한 안전관리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4)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6.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5) 한기정(2017), 『보험법』, 박영사, pp. 198~202

-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에 고지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리스크관리 상황에 기초하여 보험기간 동안 사고예방과 손해축소 등의 안전관리를 지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⁶⁾

■ 이러한 보완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험계약자 당사자 간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리스크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보험계약자는 보험 목적물과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상황에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면 조사서(Risk Survey Report)를 이용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게 되므로 민원발생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리스크 조사 보고서를 이용하여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상황에 부합한 보험료부과가 가능하고, 언더라이팅 정보 축적을 통한 리스크평가 능력이 향상이 될 것임
- 또한 사회전반의 리스크가 줄어들어 단위 리스크당 보험료는 낮아지기 때문에 계약자는 기존 담보의 확대나 새로운 리스크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kiri**

6) 중국 보험법 제51조(피보험자의 안전규정의 준수)는 재산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의 안전규정 준수의무와 보험자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清河雅孝·周喆(2010), 2009年の中国改正保険法, 『産大法学』, 43卷3・4号, p. 279

- 피보험자는 소방, 안전, 생산조업 및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국가 규정을 준수하고 보험 목적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함
-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보험목적물의 상황을 점검하여 목적물에 위험요소와 은폐된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위험요소와 은폐된 위험 요소에 대한 제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의 안전 확보에 부담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동의를 거쳐 안전예방조치를 할 수 있음